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10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9. 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영교 의원)

현행법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제비는 장제를 치른 자에 대하여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현행법은 실제 장제를 치렀는지와 관계없이 유족 순서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장제비 지급의 불합리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장제’라는 용어도 그 입법취지와 실례에 따라 ‘장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규정에도 ‘장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장례를 직접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제103조, 제152조의2 및 제17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현행법령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유족에게 장제비를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유족순서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장제비를 지급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려는 것으로 장제비의 지급 목적은 장제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짐.

또한, 이와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장례를 지낸 유족’으로 개정할 경우 유족의 범위 자체가 불명확해지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한편, 개정안의 내용 중 ‘장제’를 ‘장례’로 용어 변경하는 사항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